



韓 · 美 FTA 금융업권별 쟁점 및 대응방안(1. 은행산업)

申 龍 相 (研究委員, 3705-6329)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규제에 대해서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 건전성규제, 금융시스템 안정 등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은행권 관련 미국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및 규제의 유효성,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한 · 미 FTA 금융협상 진행상황

- 한 · 미 양국은 지난 5월 19일 FTA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6.5~9일 워싱턴에서 금융시장 개방의 원칙을 정하는 1차 협정문 협상을 마무리하였음.
- 우리 정부는 협상의 기본방향으로 ‘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approach),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approach)’을 취하는 혼합방식(hybrid approach)을 제시함.
 -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이 미비되어 있는 국경간 거래의 개방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방방식인 열거주의를 유지하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관련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개방을 허용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하는 포괄주의를 근간으로 한 협상방식을 제시함.
 - 新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되 건전성조치와 같은 예외조항을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함.
 - 또한 2003년 미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미국-싱가포르간 FTA 사례를 기준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융서비스 개방을 허용하는 선에서 협상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및 新금융서비스의 개방 최소화, 상업적 주재 관련 금융서비스 원칙적 개방”이라는 틀 안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미개방 상태에 있는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규제에 대한 미국측 요구사항과 개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개방이 주로 상업적 주재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옴에 따라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양허표상 극히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만 유지되고 있음.



- 은행산업 부문에서는 향후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불인정,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외은지점 추가설치 관련 규제, 원화 유동성비율 제한 등의 규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난 3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재로 개최된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관련 공청회에서 취합된 미국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은행산업 상업적 주재 관련 미국측 예상 요구사항

구 분	미국 측 주장
규제의 투명성 부족	· 미국은 한국이 규정 변경시 이를 고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 원화유동성비율 산출방법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
외은지점 본점자본금 불인정	· 외은지점의 자본적정성 규제시 해외소재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외화자산 국내운용 관련 규제	· 여신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금리(한국은행의 Swap Rate)도 시장금리가 아님. · 또한 1개월 이하 원화예금에 대한 금리를 최고 1% 이하로 규제
금융영역간 장벽	· 통합·겸업주의가 아닌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금융영역간 장벽이 존재
과도한 인허가 요구사항	· 상품 인허가 및 보고서 제출, 해외송금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요구사항이 매우 복잡함. ·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국인 투자등록을 요구
소유제한	· 은행법의 개정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은 없어졌으나 동일인 보유한도 제한으로 10%, 25%, 33% 초과시마다 감독당국의 인가를 득해야 함.
고객정보 해외유출 제한	· 고객정보의 해외유출을 제한함에 따라 해외 소재 본점 및 계열사 등과의 후선업무 공유가 곤란

주 : 동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재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미국 서비스산업연합회(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의 의견을 종합한 것임.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불인정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감독규정 제10조)

- (규제현황)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지점(이후 외은지점)의 필요자원 조달 및 운용상의 한도를 본점자본금이 아닌 금감위가 인정한 영업기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영업기금을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갑기금은 해외본점이 당해 외은지점에 제공한 원화자금, 당해 외은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지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이미 국내에 설치된 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으로 구성되며 지점별로 최소 30억원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함.
 - 을기금은 외은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고 조달한 원화자금, 만기 1년 이상의 외은 본점 또는 국외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00%를 초과할 수 없음.
- (규제목적) 은행에 대한 자본금 규제는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외국지점 자본금의 경우에는 외국은행 본점이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감독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본점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규제임.

■ (미국측 요구사항) 영업기금제도로 인해 외은지점의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본국의 자본금을 현지에서 영업기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외은지점은 하나의 독립적 법인체가 아니고 본국의 모은행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이므로 자체적인 자본금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미국은 외은지점에 대해 본점자본금을 인정하고 있어 상호주의 차원에서 차별적 규제라는 논리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외은지점의 입장에서 자본금의 역할을 하는 영업기금은 영업활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내은행을 인수하지 않고 영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외국은행을 중심으로 본점자본금 인정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응방안) 현행 외은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불인정 제도는 국제관행에 크게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제도의 유지가 필요할 것을 판단됨.

- 미국계 외은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인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성격이 강하며, 나아가 높은 수준의 본점자본금을 활용한 미국계 외은지점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대출시장이 빠르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도 본점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BIS 바젤위원회에서도 외은지점의 감독상 차별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미국이 체결한 미국-칠레 FTA에서도 외은지점과 해외본점의 거래에 대해 양자를 독립된 개체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특히 본점자본금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Asset Pledge Requirement¹⁾ 제도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자본금 규제를 실행하고 있음.

■ 만일 외국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점자본금 전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적정수준의 의제 자본금을 인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미국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미국-카타르 FTA의 경우 외은지점의 본점자본금을 인정하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국내은행의 평균자본금을 인정하거나 외은지점 기초자본의 일정 배수(multiplier)를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 미국내 외은지점은 각 주 감독당국에 별도의 계정을 통해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CED: Capital Equivalency Deposit)해야 하는데 그 규모를 각 주내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 또는 third party 채무의 5% 중 큰 액수로 정하고 있음. 그 규모는 대략 자산규모의 5~7%, 4백만 달러 정도의 수준임.



② 외국 금융회사 은행업 진출 및 외은지점 추가 설치 관련 규제 (은행법 제58조, 은행 감독규정 제10조)

- (규제현황)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기 진출한 타업권 금융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현 규제 하에서는 해외에 위치한 외은본점이 국내에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규제목적 및 대응방안) 동 규제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당분간 유지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증권·보험 등 3대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겸업을 위해서는 각 업권별로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감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현재 각 금융권역별로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 및 부수 및 주변 업무의 겸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동 규제의 완화는 현행 감독체계가 3대 업권별로 분리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기능별 감독체계로의 개편을 전제해야만 할 것임.
 - 한편 미국의 경우 외국은행이 10만 달러 이상의 소매예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부보 은행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등 은행산업 진입에 대한 장벽이 매우 높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규제완화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외화자산 국내운용에 대한 규제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

- (규제현황) 외은지점이 여신영업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총액한도(외국환 open 포지션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외은지점의 외국환 open(외국환 매입초과, 매각초과) 포지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 5% 또는 5백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음.
- (규제목적 및 대응방안) 동 규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과도한 원화자금을 조달하여 외환시장에 투기적 공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외화건전성 유지 차원의 규제이며,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비차별적 규제이므로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도 수량적 제한은 없지만 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대규모 외환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는 주별, 월별, 분기별로 5대 주요 외환과 미 달러화 포지션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상호주의 차원에서도 동 규제 존치의 당위성을 관철할 필요가 있음.